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

제 출 자 : 달 성



개정이유

국민건강보험법이 2000. 7. 1.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중 비급여 대상인 치과진료 항목과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제증명 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 및 제증명 관계 조문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코자 함.

근거법령

- 지역보건법 제14조 (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)
-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(수수료 징수)
-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(비급여대상)
-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

주요골자

- 운전면허적성검사 및 의료기록사본(X-선필름) 발급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란 신설
(별표2/ 운전면허적성검사 1통당 500원, 의료기록사본 1매당 3,000원)
- 비급여 대상인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시 진료수가 신설(별표3/ 충전치료 10,000원))
-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등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(안 제12조3항)

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“의료보험법”을 “국민건강보험법”으로, “의료보험”을 “국민건강보험”으로 한다.

제9조중 “의료보험약가”를 “국민건강보험약가”로 한다.

제10조중 “의료보험법”을 “국민건강보험법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중 “의료보험”을 “국민건강보험”으로, “「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」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」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3항중 “스케일링수가”를 “스케일링수가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수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별도의”를 “진료 및 별도의”로 하고,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.

별표 2중 제11호를 제12호로,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운전면허적성검사	1통당	500원	
10. 의료기록사본(X-선필름) 발급	1매당	3,000원	14×17인치

별표 3의 스케일링란 다음에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이용한 충전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이용한 충전치료	충치치료	10,000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8조(진료수가)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<u>의료보험법에</u> 의하여 고시한 <u>의료보험</u>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진수한다.</p>	<p>제8조(진료수가) ----- -----<u>국민건강보험법</u>----- -- <u>국민건강보험</u>----- -----.</p>
<p>제9조(약가)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<u>의료보험약가</u>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9조(약가) ----- -----<u>국민건강보험약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0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<u>의료보험법</u>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</p>	<p>제10조(타법령에 의한 수가) <u>국민건강보험법</u>----- -----.</p>
<p>제11조(기타 수가) ①<u>의료보험</u>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,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열구전색 및 불소도포 진료비용은 「<u>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</u>」의 보건(지)소 초과 1회 방문당 수가로 징수한다.</p>	<p>제11조(기타 수가) ①<u>국민건강보험</u>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「<u>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</u>」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<u>치과진료중 스케일링수가는</u> 【별표 3】 과 같이 징수한다.</p>	<p>③----- <u>스케일링수가 및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수가</u>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(생략)</p>	<p>제12조(증명발급 수수료) ①(현행과같음)</p>
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<u>별도의</u> 검사(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)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계산한다.</p>	<p>②----- -----<u>진료 및 별도의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신설></p>	<p>③ <u>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 법령에</u>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.</p>